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4. 12 선고 2021가단12397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성훈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윤정

변 론 종 결 2022. 3. 22.

판 결 선 고 2022. 4. 12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7. 10. 24.자 증여계약은 22,462,75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2,462,75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소외 D 주식회사(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)는 2017. 10. 20. 소외 C에게 1,5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, 대출금리 및 약정이율 연 14.90%로 하여 대여하였고, 2019. 3. 21. 원고에게 위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.

나. 원고는 위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차전6238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위 법원은 2020. 9. 28. “위 C은 원고에게 21,325,042원 및 이 중 14,324,787원에 대하여 2020. 9. 1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”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, 위 지급명령은 2020. 11. 28. 확정되었다.

다. 위 C은 2017. 10. 24.경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)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와 같은 날 접수 제75498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(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).

라. 이 사건 부동산 증여 당시 C은 적극재산으로는 위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고, 소극재산으로는 E은행에 대한 30,000,000원, D에 대한 15,000,000원, F조합에 대한 23,050,000원의 각 채무 등 합계 68,050,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G기관, F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, 이 법원의 대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의 주장

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은 2019. 3. 21.경 C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, 이로부터 1년이 지난 2021. 6. 25.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1)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'취소원인을 안 날'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,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,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(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).

2) 살피건대,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사실과 그로 인하여 C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사해행위 성립 여부

가. 채권자취소권의 발생

1) 피보전채권의 존재

가) 원고가 C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은 위 1의 가, 나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.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은 2019. 3. 21. 또는 이에 관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2020. 11. 28.경 발생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

나)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,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(대법원 2018. 3. 27. 선고 2017다287730 판결 등 참조),

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,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다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(대법원 2006. 6. 29. 선고 2004다5822 판결 참조)

다) 살피건대,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이미 소외 회사의 C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,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대출행위가 있었고, 실제로 연체가 발생하여 그 원리금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, 소외 회사의 C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되고, 원고의 양수금 채권 역시 피보전채권이 된다.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2)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(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).

살피건대, 이 법원의 G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, 이 법원의 대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은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이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,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유일한 부동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C이 소외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면 그와 같은 증여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, 이 경우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이유로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인바, 당시 피고가 채무자인 소외 C이 연체를 할 상황이라는 점에 대하여 예측가능성이 없고, C의 채무에 대해 알 수는 없었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, 이와 달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(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5다44472 판결 등 참조), 피고와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반복된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원상회복의 방법

가. 가액반환

1)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,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,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(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). 한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와 가액반환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,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며,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(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).

2) 살피건대,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와 2015. 8. 20. 접수 제82545호로 채권최고액 9,100만 원, 채무자 C, 근저당권자 F조합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, 위 등기는 이 사건 증여 이후 2017. 11. 3.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다.

나. 원상회복의 범위

- 1)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2021. 2. 18. 기준으로 22,462,752원이다.
- 2)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,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, 이 법원의 F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. 2.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85,500,000원일 것으로 보이고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며,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3,050,000원이므로,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62,450,000원(=185,500,000원 - 23,050,000원)이 되는바, 이 보다 적은 원고의 C에 대한 위 피보전채권액 22,462,752원이 피고가 반환할 가액이 된다.
- 3)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22,462,75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가액반환으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22,462,7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5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노진영